「평창군 한우번식기반 확충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의 안 번 호

발의 년월일 : 2008. 01 .

발 의 의 원 : 김영해 의원외 2명

1. 제안이유

지역 축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고, 한우 번식기반의 안정적인 확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축산 경쟁력을 확보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지원대상(안 제3조)
 - 생산송아지를 직접 사육하거나 관내에서 사육하기 위하여 매매하는 축산농가
- 나. 지원내용(안 제4조)
 -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산송아지에 대하여 한 마리당 30만원 이내의 생산장려금 지원
- 다. 지원신청 및 지원(안 제5조 내지 제6조)
 - 지원신청인은 생산송아지 생후 6개월 이내에 평창군수에게 제출
 - 평창군수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입금
- 라. 환수(안 제7조)
 -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『붙임1』

나. 예산조치 : 2008년도 추경예산 반영

평창군 한우번식기반 확충 지원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평창군의 안정적인 한우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평창한우의 번식기반 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①"축산농가"라 함은 평창군 내에 주소와 축산시설을 두고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.
- ②"생산송아지"라 함은 축산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한우 암소가 생산하는 한우 송아지를 말한다.
- 제3조(지원대상) 지원대상은 생산송아지를 직접 사육하거나 관내에서 사육하기 위하여 매매하는 축산농가로 한다.
- 제4조(지원내용) ①평창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산송아지에 대하여 한 마리당 30만원 이내의 생산장려금(이하 "장려금"이라 한다)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②제1항의 장려금은 생산송아지의 축산농가에 지급한다.
- 제5조(지원신청 등) ①장려금의 지원신청인(이하 "신청인"이라 한다)은 생산송아지 생후 6개월 이내에 별지서식의 평창한우 생산장려금 지원신청서(이하 "신청서"라 한다)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제1항의 신청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신청서 1부
 - 2. 인공수정증명서 사본 1부
 - 3. 매매증명서 사본 1부.
 - 4. 예금통장 사본 1부
- 제6조(지원)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장려금을 입금하여야 한다.
- 제7조(환수) ①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.
-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대장 또는 파일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- 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]

평창한우 생산장려금 지원신청서

1. 사업명:

2. 사 업 자

○ 주 소:

○ 성 명 :

3. 신청내역

송아지 생산내역				시처그애	사육여부			
어미소 명호	정액명호	생산송아지		신청금액 (단위 : 원)	사작어구		비	고
		암	수	(271 · 2)	사육	OH OH		

평창군 한우번식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한우 생산장려금을 신청합니다.

200 년 월 일

신청자 주 소 :

성 명: (인)

주민등록번호 :

평창군수 귀하

관계 법 령

「지방자치법」

- **제9조 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3. 농림·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
 - 아.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
- 제22조 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「축산법」

- 제32조 (송아지생산안정사업) ①농림부장관은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·공급하고 소 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송아지의 가격이 제4조에 따른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송아지 생산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한다. 이 경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소의 범위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.
 - ②제1항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받으려는 송아지 생산농가는 제3항에 따른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.
 - ③농림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 - 1. 참여 자격
 - 2. 참여기간·참여방법 및 참여절차
 - 3.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지급조건·지급금액 및 지급절차
 - 4.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자금조성 및 관리
 - 5. 그 밖에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
 - ④농림부장관은 제3항제4호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송아 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는 송아지 생산 농가에게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지급한도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 -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

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⑥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총 지급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초과하여 송아지생 산안정자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될 때에는 그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된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.

- 1. 당해 연도의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예산액
- 2. 「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」에 따른 당해연도의 보조금 최소 허용한도액